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거목”을 “법 제2조제1호너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공동기재될 것
2. 생성되는 정보의 시간 순서대로 기재될 것
3. 그 밖에 분산원장의 기재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준수할 것

⑥ 법 제2조제4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나. 제14조의 사항

2.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제2호에서 준용하는 사항 중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한정한다)의 사항

나. 제17조의 사항

⑦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6항 각 호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원장과 전자적으로 연계된 다음 각 호의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의 사항이 작성되는 연계장부인 고객계좌부

2. 제6항제2호의 사항이 작성되는 연계장부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제2장에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③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분산원장등은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4호가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에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허가”는 “등록”으로, “전자등록

업에 상당하는 영업”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에 상당하는 업무”로 본다.

2. 대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최근 5년간 법 제19조의2에 따른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이 직권취소된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

⑤ 법 제19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3조제6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인계좌관리기관과 전자등록기관 사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고객 사이 또는 해당 기관의 고객 상호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이나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을 제외하며, 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등이 전자등록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등록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발행인계좌관
리기관등록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
지를 심사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등
록의 신청과 심사,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등록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간을 말한다.

1.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다른 기관 등

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 걸리는 기간

2. 금융위원회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또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11조의5(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9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제17조의2(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마목, 사목, 아목, 카목, 파목 또는 하목
2.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권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17조의3(분산원장등의 요건) 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분산원장등을 이용한 전자등록업무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

자”라 한다)가 전자등록기관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될 것

2.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가. 참여자가 전자등록기관인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나. 참여자가 계좌관리기관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3. 전자등록기관이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4. 해당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기 위해 분산원장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안정적인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7조의4(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 정보 기재 및 관리 방법) 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등록 정보의 기재 및 관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산원장등에 전자등록 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계좌관리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실명정보가 아닌 정보 :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고 관리할 것

2. 제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 연계장부인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고 관리할 것

제17조의5(분산원장등인 고객계좌부의 열람·출력·복사) 법 제23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부의 내용을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고객계좌부의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파일의 형태로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3.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열람 또는 출력·복사의 방식으로 정하는 방식

제17조의6(전자등록주식등의 전환 절차) ① 법 제2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른 전환 절차를 말한다.

1. 발행인은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전환을 하고자 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전환일”이라 한다)에 전환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것
2. 발행인이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전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할 것
3. 제2호에 따라 전환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내용

을 검토하여 전환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발행인 및 해당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고객계좌부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할 것. 이 경우 전환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문의 검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제3호에 따라 전환이 결정된 경우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각각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와 고객계좌부를 전환일에 전환할 것

② 법 제23조의2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이용되는 분산원장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직권으로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7(개인신용정보의 관리 기준 등)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개인신용정보 삭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계장부에 기재된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기술적 특성상 삭제가 어려운 분산원장에 기재된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1. 분산원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사유 및 조회 권한을 가진 임직원의 제한
2. 분산원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산원장등록주식 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에서 고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와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각각 전자등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양수계좌관리기관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의 기록을 할 것

2. 고객계좌에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계좌관리기관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와 양수인의 계좌관리

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각각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 기관에 지체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감소의 기록을 할 것

3. 서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간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계좌관리기관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와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각각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와 양수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각각 감소와 증가의 기록을 할 것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해소적립금)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이하 “초과분해소적립금”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1.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발행가액 총액의 100분의 1

2. 제11조의2제1항의 금액

②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초과분해소적립금을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에 신탁하거나 동 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분해소적립금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내부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초과분해소적립금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파산·해산 또는 제1호”를 “파산·해산,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2.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이 성질상 또는 법령상 양도될 수 없거나 그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3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산원장등록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정보 또는 기록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분산원장에 기재된 정보는 셋 이상의 참여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분산하여 보존할 것

2. 제1호의 참여자 중 분산원장의 공동 기재 및 관리에 참여하지 않게

된 자는 전자등록 정보를 분산원장으로부터 추출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별도 보존할 것

3. 연계장부에 기재된 정보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에 따라 보존할 것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합병등의 승인의 심사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양도 승인의 심사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심사
6. 법 제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검토 및 같은 항 후

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다만, 해당 검토 및 보완 요구의 대상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해당 검토 및 보완 요구의 대상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한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나. 법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다.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다의2. 법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1호의2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다의3.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열람, 출력 또는 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1호의3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다의4.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2호2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라.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3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2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바.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3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사.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4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아. 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5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6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차.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4호	2천만원	3천원	5천만원
카. 법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7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타. 법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8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파. 법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9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하. 법 제37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10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거. 법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11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너.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	법 제75조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제2항 제12호			
다. 법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5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러.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6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며. 법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7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버.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8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서. 법 제41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9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서의2.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9호의2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어. 법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13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저.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	법 제75조 제2항 제14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처.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10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커.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11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터. 법 제51조제3항(법 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15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부 칙

이 영은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식등의 범위) ①·② (생략) <u><신 설></u>	제2조(주식등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법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u>
<u>③ 법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u> 1. ~ 3. (생략) <u><신 설></u>	<u>④ 법 제2조제1호너목-----</u> ----- ----- ----- 1. ~ 3. (현행과 같음) <u>⑤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u> <u>1.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공동기재될 것</u> <u>2. 생성되는 정보의 시간 순서대로 기재될 것</u> <u>3. 그 밖에 분산원장의 기재 기</u>

<신 설>

<신 설>

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요건을 준수할
것

⑥ 법 제2조제4의2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하
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
항

가.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나. 제14조의 사항

2.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하
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
항

가.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제2호에서 준용하는
사항 중 법 제22조제2항제
2호에 한정한다)의 사항

나. 제17조의 사항

⑦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6항
각 호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
기 위하여 분산원장과 전자적으
로 연계된 다음 각 호의 전자등
록계좌부를 말한다.

<신 설>

1. 제6항제1호의 사항이 작성되는
연계장부인 고객계좌부

2. 제6항제2호의 사항이 작성되는
연계장부인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제11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19조
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업무
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업
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
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③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분산원장등은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4호가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에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허가”는 “등록”으로, “전자등록업에 상당하는 영업”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에 상당하는 업무”로 본다.

2. 대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최근 5년간 법 제19조의2에 따른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이 직권취소된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

⑤ 법 제19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3조제6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발행

<신 설>

인계좌관리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인계좌관리기관과 전자등록기관 사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고객 사이 또는 해당 기관의 고객 상호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
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
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이
나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
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
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
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
인 법인을 제외하며, 설립일로
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 재
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
한다)

6.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

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등이 전자등록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19조의2제2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등록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발행인

<신 설>

계좌관리기관등록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등록의 신청과 심사,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등록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

<신 설>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 걸리는 기간

2. 금융위원회가 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혐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또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의 심사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11조의5(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9조의4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

<신 설>

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제17조의2(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마목, 사목, 아목, 카목, 파목 또는 하목

<신 설>

2.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권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17조의3(분산원장등의 요건) 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분산원장등을 이용한 전자등록업무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전자등록기관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될 것

2.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가. 참여자가 전자등록기관인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나. 참여자가 계좌관리기관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신 설>

3. 전자등록기관이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4. 해당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기 위해 분산원장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안정적인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7조의4(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 정보 기재 및 관리 방법) 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등록 정보의 기재 및 관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산원장등에 전자등록 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법 제23조제2

<신 설>

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계좌관리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실명정보가 아닌 정보 :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고 관리할 것

2. 제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 연계장부인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고 관리할 것

제17조의5(분산원장등인 고객계좌부의 열람·출력·복사) 법 제2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부의 내용을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고객계좌부의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파일의 형태로 열람 또는 출력·

<신 설>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3.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에
서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
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열람 또는 출력·복사의 방식
으로 정하는 방식

제17조의6(전자등록주식등의 전
환 절차) ① 법 제2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른 전환
절차를 말한다.

1. 발행인은 법 제23조의2제6항
에 따라 전환을 하고자 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전환일”이
라 한다)에 전환을 추진한다
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공고할 것

2. 발행인이 전자등록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전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할 것

3. 제2호에 따라 전환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전환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발행인 및 해당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고객계좌부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할 것. 이 경우 전환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문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제3호에 따라 전환이 결정된 경우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각각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와 고객계좌부를 전환일에 전환할 것

② 법 제23조의2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이용되는 분산원장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신 설>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직권으로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7(개인신용정보의 관리 기준 등)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개인신용정보 삭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계장부에 기재된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기술적 특성상 삭제가 어려운 분산원장에 기재된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1. 분산원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사유 및 조회 권한을 가진 임직

제2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 ④ (생략)

<신설>

원의 제한

2. 분산원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제2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산원장
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
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
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
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에
서 고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부와 양수인의 고객계좌부
에 각각 전자등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양수계좌
관리기관 고객관리계좌부

에 증가의 기록을 할 것

2. 고객계좌에서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로의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계좌관리기관은 양도
인의 고객계좌부와 양수인
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
좌부에 각각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
기관에 지체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
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
계좌부에 감소의 기록을
할 것

3. 서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간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계좌관리기관은 양도
인의 고객계좌부와 양수인
의 고객계좌부에 각각 전
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

<신 설>

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
계좌부와 양수계좌관리기
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각
각 감소와 증가의 기록을
할 것

제35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해소적립금) ① 법 제42
조의2제1항에 따라 발행인계좌
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이하 “초과분해소적립금”
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립하여
야 한다.

1.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관리
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된 주식등의 발행가액 총액의
100분의 1

2. 제11조의2제1항의 금액

②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
항에 따른 초과분해소적립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
자에 신탁하거나 동 법 제105조
제1항제3호의 금융기관에 예치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①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생략) <u><신설></u> 2. <u>계좌관리기관의 파산·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u>	<u>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 ③ <u>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분해소적립금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내부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초과분해소적립금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 등이 성질상 또는 법령상 양도될 수 없거나 그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u> 3. ----- -- <u>파산·해산, 제1호 또는 제</u>
--	---

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③ (생략)

제39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2호---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산원
장등록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분산원장에 기재된 정보는
셋 이상의 참여자가 물리적으
로 분리된 장소에서 분산하여
보존할 것

2. 제1호의 참여자 중 분산원장
의 공동 기재 및 관리에 참여
하지 않게 된 자는 전자등록
정보를 분산원장으로부터 추
출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별도 보존할 것

3. 연계장부에 기재된 정보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방법에 따라 보존할 것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는 법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
 에게 위탁한다. 다만, 권리자 보
 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5조(권한의 위탁) ① -----

 -----.

 -----.

1.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
 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
 과 관련한 심사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
 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예비
허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의 확인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합병
등의 승인의 심사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양도 승인의 심사

<u><신 설></u>	5. <u>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 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을 위 한 승인신청서의 심사</u>
<u><신 설></u>	6. <u>법 제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 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 구. 다만, 해당 검토 및 보완 요구의 대상은 법 제19조의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 된 사항에 한한다.</u>
1. ~ 5. (생 략)	7. ~ 11. (현행 제1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② <u>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검토 및 같 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에 관 한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등록기 관에 위탁한다. 다만, 해당 검토 및 보완 요구의 대상은 법 제19 조의2제2항제4호에 한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4